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10-251 |
|----------|--------|

제출연월일 : 2010. 8.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2010. 1. 1 지방세법 일부 개정으로 자치단체 상호간 자동차세 징수촉탁에 의한 세입증대시 포상금 지급을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시 포상금 지급대상 신설(안 제2조)
 - 2010.1.1 지방세법 일부 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 추가
(자치단체 상호간 자동차세 징수촉탁 규정)
- 나. 징수촉탁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 신설(안 제3조)
 - 징수촉탁으로 자동차세 체납징수시 수탁기관 교부금의 10% 포상금 지급규정 신설
- 다. 징수촉탁에 따른 포상금 지급한도 신설(안 제3조의2)
 - 개인별 징수포상금 지급한도 현행유지
- 라.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법률용어의 순화를 반영하여 일부 표현 변경

3. 개정근거

- 가.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표준안 시달
 -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909(2010. 3. 4)
 - 서울시 38세금징수과-5709(2010. 3.10)

4. 조례안 : 따로 붙임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6.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 2010. 7. 15. ~ 8. 4. (제출된 의견 없음)

나.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10.8.26)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1호에 불구하고”를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4. 지방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제3조제4호 중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를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탈루세액등”을 “탈루세액 등”으로 각각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2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제3조의2제1항 본문 중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를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7호의”로 한다.

제4조제5항 중 “3분의2이상의”를 “3분의 2 이상의”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이중부과등”를 “이중부과 등”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2조(지급대상) ① (생략) 1.~3.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② (생략)</p> <p>③ 제1항제1호에 불구하고 국장급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제3조(지급기준) (생략) 1.~3. (생략) 4.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u>10만원이상 30만원 이하</u>.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5. (생략) 6.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의 추징에 관하여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이 경우 “중요한 자료”란 「국세기본법」 제84조</p> | <p>제2조(지급대상) ①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지방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p> <p>제3조(지급기준)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 <u>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u> ----- 5. (현행과 같음) 6. ----- “탈루세액 등” -----</p> |

| 현행 | 개정안 |
|--|---|
| <p>의2제2항에 따른 자료에 준하는 자료를 말한다.</p> <p>가. (생략)</p> <p>나. 가목 외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 국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세에 대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 제공된 자료에 따른 <u>탈루세액등</u>이 신고 건당 1천만원 미만이거나 그 자료에 대한 사실검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p> <p>(1) <u>탈루세액등</u>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 징수액의 100분의 5</p> <p>(2) <u>탈루세액등</u>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250만원+5천만원 초과징수액의 100분의 3</p> <p>(3) <u>탈루세액등</u>이 1억원 초과 : 400만원+1억원 초과징수액의 100분의 2</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 <p>가. (현행과 같음)</p> <p>나. -----</p> <p style="text-align: center;"><u>탈루세액 등</u></p> <p>(1) <u>탈루세액 등</u></p> <p>(2) <u>탈루세액 등</u></p> <p>(3) <u>탈루세액 등</u></p> <p>7. <u>제2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u></p> |
| <p>제3조의2(지급한도) ① <u>제3조제1호</u>부터 <u>제3호까지</u>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p> | <p>제3조의2(지급한도) ① <u>제3조제1호</u>부터 <u>제3호까지와 제7호의</u> -----</p> |

| 현행 | 개정안 |
|---|---|
| <p>1.~2.(생략) ② (생략)</p> <p>제4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 ④ (생략)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u>3분의2이상</u>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생략)</p> <p>제8조(환수) ① (생략)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u>이중부과</u>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생략)</p> | <p>1.~2.(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p>제4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u>3분의2 이상</u>의 ----- ⑥ (현행과 같음)</p> <p>제8조(환수)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이중부과</u> 등 ----- ----- ③ (현행과 같음)</p> |